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2. 3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9. 2. 10
- 다. 상정일자 : '99. 2. 10(제7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김재월

나. 제정사유

- 화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화순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군, 사업자, 군민, 의책무 및 언론, 학교, 군민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2조 ~ 제9조)
-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방지 비용 및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
-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등이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재정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군수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을 위해서 군과 사업자, 군민등 각계각층의 역할과 의무 및 행동기준을 명시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다함께 노력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깊게 생각됨.
- 그러나 환경정책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 실정에 준하여 규정하는 선언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환경보전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조정위원회」 구성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등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제정의 절차상 검토결과,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

화순군행정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자손만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부른회순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군민 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하여는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세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능)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원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